

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9. 18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20호로 2023년 9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의거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 근거조항 신설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나.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(안 제5조제5항)
- 다. 상위법령 제명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문구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29조, 안 제30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8. 3. ~ 8. 23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의거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 근거조항 신설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성년이 된 구민에게 어엿한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, 초년 사회인으로서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또한 위기청소년의 보호·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청소년 기본법

-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# 2 청소년복지 지원법

-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